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



김소현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1. 공공요금의 원가검증 이유와 배경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2007년말 249.2조원⇒2012년말 493.4조원)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자보상비율 또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작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부채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들 18개 공공기관¹⁾ 중 5개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원가를 국민으로부터 요금수입을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부채감축과 공공요금 조정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일례로, 한국전력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전기요금 역제가 최근 5년간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 요금조정을 위해

1)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기관 자체적으로도 경영효율화.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기관에 경영효율화.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제3의 검증기관으로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2. 원가검증 진행상황 및 계획

원가분석팀에서는 회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산정기준 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업무는 본격적으로 2월에 시작되었으며 2013년 5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이후 이를 토대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2012년 원가자료를 토대로 기존 원가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항목별 원가절감 요인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원가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요금 간 상이한 원가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간의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이 떨어졌고, 공공기관의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공공요금 원가계산시 포함되는 규제산업과 제외되는 비규제 사업간의 구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구분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큰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경우 재료비의 비중이 '12년 총괄원가 기준으로 각각 86%,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가오는 6월에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원가분석팀에서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원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 방안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3. 향후과제

그동안 정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관이 요금산정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²⁾에서 총괄원가 산정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

2) 공공요금 산정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마련
- ②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신설
- ③ 원가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용 보고서 등을 기관에서 제출하면 제3자 검증기관이 참여하여 원가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의 서민물가와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원가 이외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요금 조정 수준과 요금조정 시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요금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요금 결정 절차와 방식 또한 좀 더 투명해지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공공요금 관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원가정보를 확인하고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 된다면 공공요금 투명성이 증대되고 기관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자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④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및 이를 위한 회계분리 기준 마련
 - ⑤ 요금산정용 보고서 작성 제출 및 필요시 제3자기관 외부검증